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3227
------	------

2025.12.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임춘대 의원(찬성자 21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임춘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별로 내부위임, 외부위임 및 공공위탁, 민간위탁, 제3자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위탁기관장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할 경우에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을 근거로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위임 및 공공위탁의 근거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종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대행 등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이 종료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을 종료할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3조).
2. 시장이 민간위탁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3제6항 신설)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종료하거나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2.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명확화 및 위탁종료시 시의회 보고

-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내부위임), 제2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외부위임 및 공공위탁), 제3항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민간위탁)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속하는 내·외부기관에 대한 위임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 속하는 공공 및 민간위탁 사무는 동 조례를 통해 규율하고 있음¹⁾.
- 이와 같이 그동안 서울시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권이 확립되기 이전인 2010년대 초반 까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미약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할 필요성이 낮았고, 실무적으로도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임.
- 그러나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그 법적근거와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위탁 가능 여부, 위탁 사무의 시행주체 등에서 차이점이 있고, 위탁 절차에 있어서도 공개경쟁을 전제로 하는 민간위탁과 독점적 위탁이 전제되는 공공위탁이 그 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서울시가 2022년부터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사업과 예산을 축소하고 사업방식을 직접수행, 대행, 공공위탁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위탁 사무는 증가했으나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 별로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공위탁과 구분하여

1) 이외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규정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조치는 바람직하다 하겠음.

- 한편 안 제4조의3제6항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수행 방식이 변경되어 민간위탁이 종료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음.
- 참고로 민간위탁 시행 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의 종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도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민간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을 할 때와 동일하게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2)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전 동의로 규정하기 보다는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사전 보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2)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68p.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27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임춘대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박춘선,
신복자, 왕정순, 유정인,
윤기섭, 이민옥, 이상옥,
이성배, 이종환, 황유정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별로 내부위임, 외부위임 및 공공위탁, 민간위탁, 제3자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위탁기관장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할 경우에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을 근거로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위임 및 공공위탁의 근거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종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대행 등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이 종료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을 종료할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3조).
- 나. 시장이 민간위탁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3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로 한다.

제3조 중 “위탁사무에”를 “민간위탁 사무에”로 한다.

제4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제3조(적용범위) <u>위탁사무에</u>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u>민간위탁 사무에</u> ----- -----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 및 보고의무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수반요인을 포함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근거법령 관련) 안 제1조의 근거법령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의 항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것일뿐 개정에 의해 조례해석이 달라지는 내용 변경사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보고의무 관련) 안 제4조의3은 시장이 민간위탁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사안을 규정한 것으로 통상 상임위원회 보고는 의회의 연간 회기일정에 맞춰 진행되므로 별다른 비용수반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